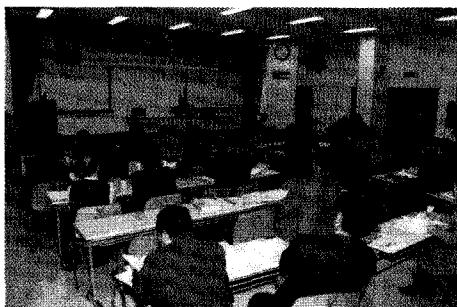


2003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설명회 개최

-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재무재표, 영농일지로 대체 가능



2003년도 육계분야 농림사업시행지침 설명회가 본회 주최, 축산신문 주관으로 본회 회원사 관계자 및 육계·종계사육농가 대표,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22일 경기 성남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생산·유통·가공부문, 방역부문, 농업종합 자금 이용방법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홍철 사무관은 계열화업체를 상대로 처음 지원되는 닭고기 체인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협이나 시·도에 등록된 계열화업체외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다만 개소당 지원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역부문과 관련해서 농림부 이수두 사무관은 “질병발생을 통해 타농가나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경영체는 철저히 규제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고 전제하면서 “뉴캐슬병의 경우 지금 현재로서는 살처분 보상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고 다만 백신접종에 따른 효과가 없다는 지

적이 많은 만큼 그 개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종합자금 이용과 관련 농림부 협동 조합과 김호성 사무관은 “농업종합자금의 시스템 자체가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지원신청자에 대한 과거 경영능력을 평가할 기준으로 재무재표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전문가가 아니면 재무재표를 작성하기 힘든 만큼 개인 양축가들은 농장경영시 수입지출에 대한 기록 정도의 영농일지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지원자격 심사시 양축가가 자신의 수입 내역에 대한 별도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업표준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가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양축가들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3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 위원회 개최

- 병아리 구매계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



현재 대부분의 육계 계열화업체의 경우 병아리 구매거래시 상·하한가의 가격제한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제한을 통한 거래가 자율적인 생산조절 기능보다 오

허려 과다한 종계입식에 따른 생산과잉 및 가격 파동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회는 지난 1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가진 2003년도 제1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각 회원사는 대부분의 거래처와 상·하한가 가격제한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을 계약기간 중이라도 시세구매토록 종계·부화장과의 협의를 통해 유도해 나가돼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하한가의 가격제한을 없애고 시세대로 가격을 적용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개선키로 결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초과한 종계에서 생산한 종란 및 병아리에 대해 구매를 거부할 것을 다시 한번 재 결의했다.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종란·병아리 공급 거래처와의 거래시 계약내용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명기하여 종계의 강제환우 및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생산한 종란·병아리 구매 거부를 반드시 실천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농림부에 유효기간 준수에 대해 제도화하여 이를 위반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

● 합의점 못 찾아 향후 다시 논의키로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의 시행방법을 놓고 각 단체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를 위한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본회(회장 김홍국)와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설치와 관련 각 단체별 의견조정을 시도했으나, 임의 활동자금으로 조성할 것인지, 의무 활동자금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대 오봉국 명예교수와 미국곡물협회 박영인 회장, 영남축산진흥회 류종래 회장 등 업계 원로 등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본회는 우선 임의 활동자금으로 조성한 후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축산업자들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의무 활동자금을 조성하자는 기존 입장을 밝혔으며, 양계협회와 농협중앙회는 법 시행 초기부터 의무 활동자금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3개 단체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합의하고, 임의 및 의무 활동자금 조성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무자 협의회에서 다시 협의 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함께 참석했던 업계 원로들은 “닭고기 자조활동자금 조성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입장은 모두 이해 할 수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오로지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만 생각해야 한다”면서 “각 단체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화와 양보로써 타협점을 찾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1월 19일 농협중앙회 양돈양계부 회의실에서는 가진 닭고기 자조금 관련 실무협

의회에서는 닭고기 자조활동 자금 설치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만 또다시 확인했다.

이날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본회 김한웅 부장은 “본회의 공식입장은 임의 자조금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자조금 거출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확보되면 의무 자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임의 자조금 주장이 자조금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자조금 사업의 본래 취지가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거출, 자신이 생산한 산물을 많이 팔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인 만큼 자조금 사업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임의 자조금이 더 접근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황일수 팀장은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된 만큼 의무자조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으며, 농협중앙회 박종규 차장은 “타 축종도 의무자조금으로 가고 있으므로 육계분야도 의무자조금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각 단체 실무자들은 닭고기 자조금에 대한 각 단체간 입장이 확고하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되어질 사안이 아닌 만큼 각 단체장들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협의했다.

2003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 종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에 대해 심의



본회는 지난 2월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2003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총회에 상정할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그리고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긴급대책으로 병아리 입식감축과 닭고기 수매비축안에 대해서 일단 사업시행 후 총회 때 추인받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본회 2003년도 정기총회

● 오는 2월 21일

수의과학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

본회 2003년도 정기총회가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수의과학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수지예산 집행결과 보고와 200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대한 심의도 갖게 된다.

또한 이날 국내산 닭고기 소비확대 공로자 표창 및 계육산업 발전 공로자에 대해 감사패 수여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2003년도 닭고기 체인점 사업 예산배정 통보

● 오는 2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지난 1월 각 회원사에서 신청한 2003년도 닭고기 체인점 사업 예산이 농림부로부터 배정 통보돼 각 회원사에서는 오는 2월 20일까지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물량 및 금액 등이 표기된 사업계획서를 농림부 및 각 시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본회(031-707-5722 김한웅 부장) 또는 농림부 축산경영과(02-500-1907)로 문의하면 된다.

닭고기 포장유통 제도화 시행 건의

● HACCP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꼭 필요

본회는 올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도계장에서의 HACCP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닭고기 포장유통을 의무화를 반드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을 농림부에 재차 건

의했다.

본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의 필요성을 지적, 관계당국에 건의해 왔었다.

닭고기 포장유통은 유통과정에서의 오염방지 및 제반 안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에서는 기 제출한 관계 법령 개정안을 참조하여 닭고기 포장지에만 검인표시를 하는 등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를 도계장 HACCP 전면시행과 연계, 제도화 시켜줄 것을 지난 2월 12일 농림부에 재차 건의했다. ◉

안전하고 깨끗한
HAIMARROW 해마로치킨
Chicken

TEL : 02-424-8211

FAX : 02-3431-9180



ISO9001인증업체
KS표시품 생산업체



(주) TS 해마로식품
TS HAIMARROW FOODS Co., Ltd.